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

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신탁업자명 :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문의가능 전화번호 : 02-2004-8963/0991

1.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가. 집합투자기구 명칭: 삼성KODEX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 나. 집합투자기구 분류: 증권[주식-파생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
- 다. 보관 • 관리기간: 2011.02.17 - 2012.02.16
- 라. 집합투자업자: 삼성자산운용(주)
- 마.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SK증권, 동부증권, 크레디트스위스증권, 골드만삭스증권, 하이투자증권

2.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변경일자	변경사유	주요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2011.12.29	제 1 조(목적 및 종류 등)	① ~② 생략 ③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 등에 분산투자하되, KOSPI200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으로서 위험회피외의 목적으로 투자한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주로 KOSPI200 주가지수를 기초지수로 하는 파생상품의 손익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의 손익이 결정되는 특성이 있으며 KOSPI200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결정되는 특성이 있으며 KOSPI200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결정되는 특성이 있으며 KOSPI200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결정되는 특성이 있으며 KOSPI200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결정되는 특성이	① ~② 생략 ③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 등에 분산투자하되, KOSPI200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으로서 위험회피외의 목적으로 투자한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주로 KOSPI200 주가지수를 기초지수로 하는 파생상품의 손익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의 손익이 결정되는 특성이 있으며 KOSPI200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결정되는 특성이 있으며 KOSPI200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결정되는 특성이 있으며 KOSPI200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결정되는 특성이

		<p>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기초지수 일간변동률의 양(陽)의 2 배수로 추종한다. 양(陽)의 2 배수로 추종함에 있어 그 운용 방법은 KOSPI200 주가지수를 기초지수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및 KOSPI200 주가지수 관련 장내 선물 및 합성선물의 매수포지션 또는 KOSPI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을 통하여 운용되며 필요에 따라 장내 파생상품 및 장외 파생상품을 조합하거나 어느 한쪽으로 운용대상 자산을 적절히 변경하여 운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의 방법 이외의 효율적인 방법을 통하여 운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국내외 경제상황 및 주가, 금리, 환율 등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채권, 채권 및 주식관련 장내외 파생상품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특히,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급격한 시장 변동, 거래상대방의 신용 악화 또는 부도 및 기타 예측하지 못한 변수 등으로 인해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자세한 위험에 대한 내용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한다.</p>	<p>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및 KOSPI200 주가지수 관련 장내 선물 및 합성선물의 매수포지션을 통하여 운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의 방법 이외의 효율적인 방법을 통하여 운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국내외 경제상황 및 주가, 금리, 환율 등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주식, 채권, 채권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p>
	제34조(투자대상 등)	<p>① 생략 1. ~ 5. 생략 6. 법 제5조제3항 의한 장외파생상품(이하 “장외 파생상품” 이라 한다)</p>	<p>① 생략 1. ~ 5. 생략 삭제 6.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에서 규정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 이라 한다)</p>

		<p>7.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에서 규정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p> <p>8.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p> <p>9. 환매조건부 매도</p> <p>10. 증권의 차입</p> <p>11.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p> <p>② 생략</p>	<p>7.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p> <p>8. 환매조건부 매도</p> <p>9. 증권의 차입</p> <p>10.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p> <p>② 생략</p>
	제35조(투자한도)	<p>① 집합투자업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운용한다.</p> <p>1. ~ 7. 생략</p> <p>8.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다.</p> <p>9. 생략</p> <p>② 생략</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운용한다.</p> <p>1.~ 7. 생략</p> <p>8.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다.</p> <p>9. 생략</p> <p>② 생략</p>
	제36조(운용 제한)	<p>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p> <p>1. ~ 6. 생략</p> <p>7.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_____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p> <p>가. 생략</p>	<p>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p> <p>1. ~ 6. 생략</p> <p>7.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_____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p> <p>가. 생략</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제외)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파생결합증권(2011년 2월 3일까지는 가목의 투자비율까지 투자 가능),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___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8. 생략</p> <p>9.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p> <p>10.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11.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12.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단,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등급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4조의4의 신용등급을 충족하여야 한다.</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제외)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___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8. 생략</p> <p>9. 삭제</p> <p>9.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10.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삭제</p> <p>삭제</p> <p>11. 투자신탁채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p> <p>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5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 이 조 제1항제2호, 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가</p>
--	--	--	--

		<p>13. 장외파생상품의 비중이 법제238조제1항에 의거 순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행위</p> <p>14.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p> <p>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5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 이 조 제1항제2호, 제7호 내지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p> <p>1~5 생략</p> <p>③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부터 1월간은 제35조제1항제9호, 이 조 제1항제2호, 제7호 및 제10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p> <p>1~5 생략</p> <p>③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부터 1월간은 제35조제1항제9호, 이 조 제1항제2호,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37조(자산운용지시등)</p>	<p>①집합투자업자는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p>①집합투자업자는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3~4. 생략 ②~④ 생략	3~4. 생략 ②~④ 생략
	제48조(수익자에 대한 공고등)	<p>①~④ 생략</p> <p>⑤ 이 투자신탁채산을 장외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상대방등 장외파생상품의 최초 계약체결에 관한 주된 내용,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 및 당해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의 변경등 주요 계약 내용의 변경 및 장외파생상품 해지에 관한 내용 등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한다.</p> <p>⑥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운용의 건전성을 유지·제고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의 위험을 관리함에 있어 위험관리전담부서를 통하여 부서별, 거래별 또는 상품별 위험한도·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운영하며 위험관리의 종합의사결정기구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고 리스크에 관한 전반적인 점검 및 필요사항을 의결한다. 아울러, 위험관리전담부서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위험, 운영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 등 각종 위험을 종류별로 평가 관리한다. 특히, 파생상품투자에 따른 위험은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공시되어야 하며 관련 법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점에 비치하거나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추가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p>	<p>① ~④생략</p> <p>삭제</p> <p>삭제</p>

3.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변경일자	변경사유	성명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협회등록번호
2011.12.29	신규	이정환	- 1995년 2월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 1998년 2월 한국과학기술원 금융공학 석사 - 1994년 12월~1999년 7월 동원증권 - 1999년 12월~2002년 4월 키움닷컴증권 Analyst - 2002년 5월~2005년 10월 동부투신운용인덱스운용	2109000465
2011.12.29	말소	김두남	- 1997년 2월 고려대 일어일문학 학사 - 2003년 2월 한국과학기술원 금융공학 석사 - 1997년 1월 ~ 1998년 8월 LG투자증권 - 1999년 7월 ~ 2000년 4월 한화투자신탁운용 - 2000년 4월 ~ 2001년 9월 조흥투자신탁운용 - 2004년 1월 ~ 2006년 9월 삼성자산운용 - 2006년 10월 ~ 2007년 4월 ING Investment Management	2109000682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해당사항없음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

- 해당사항없음

6. 회계감사인의 선임 • 해임에 관한 사항

변경전				변경일	변경후			
회계 감사인명	계약 기간	감사 보수	계약 방법		회계 감사인명	계약 기간	감사 보수	계약 방법
안진회계법인	1년	660만원	서면계약	-	-	-	-	-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위에 명기된 회계감사인보수 금액은 모집합투자기구 및 자집합투자기구에서 지급되는 보수 금액 모두를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7.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부합함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적정함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해당사항없음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공정함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 적정함
-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 집합투자신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해당사항없음
-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
 -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